

제4호(2020년 6월호)



청렴가득, 행복가득

"열린·혁신행정으로 신뢰받는 '청렴한 제주' 실현"



제주도 청렴일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 추진

부패방지분야 제도개선 적극 이행으로 부패 제로 제주 실현

* 10개 권고과제, 53개 세부과제

- 국민권익위원회 컨설팅 실시 : 2020. 6. 25.
- 제도개선 이행 완료 : 2020. 10월

상호존중의 날 개최 (매월 11*일)

직원간 상호존중 분위기 조성

- * 서로 존댓말 사용하기
- * 서로 웃으며 인사하기
- * 작은 일에도 칭찬하기 등

- 직원간 대등한 인격체(1=1)로 서로 존중하자는 의미

도지사에게 직접 신고 할 수 있습니다

공사·용역·보조금 및 각종 민원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직자가 금품·향응을 요구하거나 그 외 부당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공직자 신고센터(064-710-3650) 또는 도 홈페이지 '원지사 핫라인'

(www.jeju.go.kr)으로 언제든지 신고 바랍니다.

1 "부패신고자 비밀노출" 처벌 수위 높아진다

부패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추정할 수 있는 내용 공개·보도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기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신고자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불이익조치 중지 요구 불응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기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부패신고자를 더욱 철저히 보호하는 계기 마련,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보호·지원 확대

2 부패·공익신고자 30명에게 보상금 등 9억 5,527만 원 지급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제약회사 리베이트 등 신고 공공기관 수입회복은 81억 5천여만 원에 달해

공익침해행위 근절을 위해 신고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상금 등 적극 지급 추진

Q. 알쏭달쏭 청렴퀴즈

A+B+C의 합은?

- 제주특별자치도 상호존중의 날은 매월 A일이다.
- 「부패방지권익위법」에서 부패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면 B년 이하의 징역 또는 C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청렴퀴즈 정답을 6월 30일까지 이메일 (kya8890@naver.com)로 성함, 연락처, 주소와 함께 보내주세요, 10명을 선정하여 소정의 기념품을 보내드립니다.